고려와 조선시대의 고위층들의 특권 중 하나인 음서제도는 정당한 권리인가?

20151639 컴퓨터공학과 박정인

조선과 고려시대의 음서제도를 시기별 변화를 통해 정치권력과 사회생활의 변화를 고려하여 그 권리의 인정여부를 고민하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논문인 ｢고려와 조선왕조의 관리등용제도 변화 연구 : 음서제를 중심으로｣ [[1]](#footnote-1) 을 중요도 있게 참고하여 연구사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음서제 연구를 통해 고려와 조선사회의 양반들의 특권 유지 노력을 고찰한 것으로 음서제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고려와 조선사회의 신분질서 유지를 둘러싼 통치권력 내부의 정치적 지형을 비교, 고찰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음서제도로 인한 사회의 문제 근거 제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 정치상황과 국가 발전단계의 방향성 고려는 세심하게 서술된 것이 매우 유용했습니다.

음서제의 배경은 중국의 전한(前漢) 시대 무제(武帝) 초부터 ‘임자제(任子制)’ 의 명칭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당대(唐代) 에 제도가 정비되어 문음(門蔭), 음서(蔭敍), 음자(蔭子), 음보(蔭補), 보음(補陰)의 명칭으로 송(宋), 청대(淸代)에 까지 계속 시행되었습니다. (신채식, 1981). 송대(宋代)의 음서제는 관료제의 하부구조를 형성하는 인사제도로 음서제를 활용하였습니다. 고려와 조선의 음서제는 당과 송의 음서제 원리에 기초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서제가 도입된 것은 신라에서 국가적 공로가 있는 관료의 자손을 서용(敍用)한 사례를 그 시점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5품 이상의 관료에 대한 제도로 정착 된 것은 고려시대로 그 시점을 보아야 합니다. 고려시대는 신분사회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건국 초기 부조(父祖,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공에 의해 관리가 될 수 있었으나 그것이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음서가 제도화 된 것은 귀족들의 기득권 유지와 호족세력의 중앙관료로의 흡수라는 왕권 강화 간의 충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려시대 음서제의 종류는 고려사 선거지 음서조(高麗史 選擧志 蔭敍條)에 나타난 바를 정리하면 공신음(功臣蔭) 과 문음(門蔭)으로 분류됩니다. 공신 또는 특별한 공훈이 있는 관리의 자손에게 제수하는 음서인 공신음[[2]](#footnote-2)과 개국(開國), 전사(戰死) 등의 공훈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관직이나 품계에 오른 관리의 자손에게 제수하는 음서인 문음[[3]](#footnote-3) [[4]](#footnote-4)그리고 왕족의 자손에 대한 조종묘예음서(祖宗苗裔蔭敍) 등이 있습니다. 음서는 5품 이상 관리의 집안 남자 1인에게 한정하기도 했습니다.[[5]](#footnote-5)

조선시대 음서제의 종류는 조종묘예음서는 사라지고 공신에 대한 음서와 문음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음서의 변화는 특정 관직자의 자제라 할지라도 조선시대의 경우 취재(取才) 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 고려시대와는 그 자격기준이 엄격해 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는 귀족중심 혹은 양반중심의 사회였으므로 가문과 문벌이 중시되었고, 과거제와 음서제 등 관리등용제도는 이를 지지해주는 기반이었습니다**.** 고려시대 음서제도는 귀족이라는 제한된 신분증에 주어진 제도였으며, 조선시대의 음서제도는 지배계층의 가문 계승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본론으로 조선과 고려시대의 음서제도를 시기별 변화를 통해 정치권력과 사회생활의 변화를 고려하여 그 권리의 인정여부를 따질 때 첫 번째 경우로 음서제도를 인정한다면 그들은 고위층으로서의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그들의 생활의 고민을 덜기 위해 자녀들에게 그러한 권리를 줄 수 있다. 자신의 자식의 문제에 곤란함을 갖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음의 안정으로 더 나은 사회의 미래를 꾸려나가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선영향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오히려 권력에 맹목적이지 않고 사회 발전을 위해서 힘 쓸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우로 음서제도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특권계층의 권력을 재생산시키는 도구로 악용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효빈잡기의 내용을 들 수 있습니다.

당하관이 맡은 관직으로 정부(政府)⋅양사(兩司)[**1)**](http://contents.history.go.kr/front/ht/view.do?levelId=ht_005_0010_0010#ftid_1)⋅사관(四館)[**2)**](http://contents.history.go.kr/front/ht/view.do?levelId=ht_005_0010_0010#ftid_2) 및 이조⋅병조⋅예조 등 3조와 태상(太常)[**3)**](http://contents.history.go.kr/front/ht/view.do?levelId=ht_005_0010_0010#ftid_3) 외에는 모두 문음(門蔭) 출신을 임명한다. 지방관에 이르러서는 문관으로 군수 자리를 얻은 사람은 겨우 스물에 하나 정도이니 선왕 때와는 크게 다르다. 이른바 문인이라는 것은 이름난 인사의 아버지나 형이 아니면 반드시 자식이나 아우이다. 그러니 혹 나이가 이미 늙었거나 혹 아직 젖 냄새 나는 아이이다. 그런데도 함부로 고을 다스리는 일을 탐내 문득 돈을 움켜잡으려 손을 제멋대로 놀려서 백성들의 고혈이 이미 말랐는데도 오히려 더 빼앗아 원망이 떼 지어 일어나도 돌아보지 않는다.

고상안(高尙顔, 1553~1623), 『효빈잡기(效嚬雜記)』

고위급 인사들에게 그러한 권리를 주는 것은 폐쇄적 정치집단의 형성으로 인해서 권력의 사유화로 인해 사회를 병들게 하고 나아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위험한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재능으로 이룬 고위층의 능력은 존중 받아 마땅하지만 그들의 자식들이 그들의 부모만큼의 능력을 보여줄지는 미지수이며 오히려 새로운 정치집단의 등장을 막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가정의 부자가 혈연의 끈끈함 때문에 권력과 사회정의의 변질을 경계해야 합니다.

권력의 소수화로 인해 몇몇 가문에서 권력을 독점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권력에 변화를 줄 수 없고 심각한 보수적인 성향을 띄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예시를 들면

조선 후기에도 음서제는 문벌을 재생산하는 장치로 여전히 기능하고 있었다. 때문에 1788년(정조 12) 장령 오익환(吳益煥, 1754~1797)은 권세가의 자제들은 문음으로 벼슬에 올라 시간이 지나면 승진하여 지방관으로 나가는 데 반해 과거에 급제한 이들은 집안이 좋거나 연줄이 있지 않으면 관직에 기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6]](#footnote-6)

이처럼 음서제도를 약화시키고 적용대상을 강화했던 조선에서조차 권력의 독점화 현상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라의 귀중한 일을 하는 모든 관료가 대상이 아니라 당상관 이상만 주는 혜택 때문에 당하관들의 업무 의욕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본다면, 그들의 관리로서의 노력과 인간적인 삶을 위한 편의를 인정하더라도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킬 신입 관리수를 제한해서는 안되며 그 특혜가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불안감과 차별성을 느끼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리포트를 준비하면서 고려와 조선왕조시대의 음서제가 가지는 의미와 현재 한국사회에 던져주는 시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고 역사의 흐름에 따라 사회를 구성하는 거대한 축인 관료집단, 그리고 그 집단을 구성하는 수뇌부들의 특혜 또한 변화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공직에 대한 기회의 평등과 사회발전을 위한 유능한 인재 선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올 것 같습니다.

출처와 참고자료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riss.kr>)
   1. 2010년 ｢고려와 조선왕조의 관리등용제도 변화 연구 : 음서제를 중심으로｣ 조성택, 최연택
2. <http://contents.history.go.kr/front/ht/view.do?levelId=ht_005_0010_0010#fsid_2>(우리역사넷-[주제로 보는 한국사](http://contents.history.go.kr/front/ht/main.do) > [잡록(雜錄)⋅필기(筆記)류 자료를 통해 본 조선 시대 사람들의 삶](http://contents.history.go.kr/front/ht/sub.do?levelId=ht_005) > [1. 양반의 삶](http://contents.history.go.kr/front/ht/view.do?levelId=ht_005_0010))
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터
   1. <http://db.history.go.kr/KOREA/search/searchResult.do?itemIds=kr&sort=levelId&dir=ASC&limit=20&page=1&searchKeywordType=BI&searchKeywordMethod=EQ&searchKeyword=%EC%9D%8C%EC%84%9C&searchKeywordConjunction=AND>
4. 음서에 대한 위키백과 - https://ko.wikipedia.org/wiki/%EC%9D%8C%EC%84%9C

1. 2010년 ｢고려와 조선왕조의 관리등용제도 변화 연구 : 음서제를 중심으로｣ 조성택, 최연택

   (조성택(Sung Taek Cho)최연택(Yeon, 2010년) [↑](#footnote-ref-1)
2. 父功, 祖父功, 外祖父功, 曾祖蔭~七代祖蔭 등 勳功蔭叙를 말함 [↑](#footnote-ref-2)
3. 父蔭, 祖蔭, 外祖蔭, 伯父蔭, 甥姪蔭 등을 말함 [↑](#footnote-ref-3)
4. 정도전은 ｢조선경국전｣ 에서 고려의 문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將相 과 大臣은 모두 백성에게 공덕이 있고, 또 그들의 자손은 가훈을 이어받아 예의를 잘 알고 있으므로 모두 종정(從政)할 만하다 하여 문음제를 두었다 (박운, 2000: 5). [↑](#footnote-ref-4)
5. 顯宗五年十二月 敎, “兩班職事, 五品以上, 子孫若弟姪, 許一人入仕.” [↑](#footnote-ref-5)
6. 출처 : <http://contents.history.go.kr/front/ht/view.do?levelId=ht_005_0010_0010#fsid_2>(우리역사넷-[주제로 보는 한국사](http://contents.history.go.kr/front/ht/main.do) > [잡록(雜錄)⋅필기(筆記)류 자료를 통해 본 조선 시대 사람들의 삶](http://contents.history.go.kr/front/ht/sub.do?levelId=ht_005) > [1. 양반의 삶](http://contents.history.go.kr/front/ht/view.do?levelId=ht_005_0010)) [↑](#footnote-ref-6)